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22회 정례회
2024. 11. 28.(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현문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4년 11월 15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5일

3. 제안이유

가. 충청북도는 학령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급감 등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북형 K-유학생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나. 이에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확대 등 충북형 K-유학생 제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외국인 유학생 관련 도지사의 책무와 조례의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지원계획 수립, 지원 사업, 유치 확대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다.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및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가.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충청북도는 2024년부터 지방대학의 학생 부족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북형 K-유학생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충청북도는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동시에 제공하여 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활발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음

○ 이에 충북도에 거주하면서 충북지역 내 대학을 진학하거나, 진학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과 충북지역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 지원 등 충북형 K-유학생 제도 지원의 입법·정책적 근거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나. 제정 가능성 및 절차적 타당성

○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유학하려는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 충청북도 뿐만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2019. 9. 30. 제정), 전북특별자치도(2022. 10. 21. 제정), 경상북도(2024. 5. 23. 제정)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그 밖에 입법예고(2024. 11. 18. ~ 11. 27. / 제출된 의견 2건) 및 집행기관 협의(외국인정책추진단 / 수용[조항 추가 일부 문구 수정 등])를 거쳐 발의한 것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음

다. 주요 내용 검토

○ 이 제정안은 본칙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조문별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음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조항으로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의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에서 정한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함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하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명시함

○ **안 제4조**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등이 이 조례의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불법체류 유학생등과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규정임

○ **안 제5조**는 외국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시책, 실태조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평가 및 다음해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내실있는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내용이 타당하고 적절함

○ **안 제6조**는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적응교육, 장학금 지원, 취업·창업 연계 및 상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 등 외국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음

- 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인·단체 및 대학,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한 것은 투명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됨

○ **안 제7조**는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등의 유치 확대를 위해 홍보 및 설명회, 유학컨설팅 및 박람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업내용이 적절함

○ **안 제8조**는 제5조와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 지원 및 수탁자 지도·감독 등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이 타당함

○ **안 제9조**는 외국인 유학생등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라. 그 밖에 검토 사항

○ K-유학생 관련 부서인 **외국인정책추진단**은 '충북형 K-유학생 제도 추진에 있어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와 더불어 유학생들의 지역 정착 및 안정적인 시간제 취업 연계, 각종 사회적응 활동 및 분야별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고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다만, 조례안 예고 시 제출된 **반대의견(붙임1)**이 있었음

- 박○○, 상당구, (전화번호 생략)

① 우수 외국인 유학생,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음
② 외국인 유학생 뿐만아니라 어학연수생까지 장학금 지원 혜택은 국가재원 낭비임(지원받고 본국으로 귀국하면 국가재원낭비)
③ 장학금, 주거지원, 법률상담, 취업 등 연계는 광범위한 지원으로 내국인 및 국내 학생 역차별임
④ 유치확대가 지방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은 아님
⑤ 무조건 외국인 유학생 또는 어학연수생에게도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원 및 창업·취업 연계는 과도하며, 국가재원 낭비여지가 큼
⑥ 무슬림 위장 유학생, 취업 목적 위장 유학 등은 국내 학생들을 역차별하는 것으로 강력히 반대함

- 진○○, 청원구, (전화번호 생략)

① 지방대학, 인구감소 문제를 유학생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에 유익이 없음 ② 지원사업 및 유치확대는 예산낭비임(국내 학생 지원 확대 필요) ③ 개인목적으로 온 유학생에게 한국어 교육 및 장학금 지원은 특혜임 ④ 유치확대위한 설명회 등은 대학 업무로 충북도 예산집행 불필요 ⑤ 공산주의 사상(종교관) 등 조례 취지 악용 등 예산낭비 여지 있음 ⑥ 다문화정책 등 유럽에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할 필요가 없음 ⑦ 개인 학업 목적 유학생을 지원할 필요성이 없음(오히려 가임기여성에게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해야함)

○ 제출된 반대의견에 대한 **외국인정책추진단의 검토의견(붙임2)**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① 충북의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에 따른 교육서비스 생산유발효과(등록금으로 인한 효과)는 864.4억원으로 장학금 일부 지원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우수 유학생을 충북도로 이끄는 것은 우수 인력과 입국 시에 대한민국에 보증하는 외화(1,600만원)를 동시에 유치하는 것임 ② 현재 충북도 내 기업·산업계는 만성적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도내 청년들은 제조업·뿌리산업 등 취업을 꺼리는 상황으로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로 지역산업 인력공급에 외국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유학생 시기부터 학업·체류를 지원하여 양질의 외국인력이 지역산업에 투입·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임 ③ 도내 대학의 내국인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통한 학비 지원,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창업 지원을 받고 있으나, 유학생들은 관련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 ※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매년 인상하여 재정 충원 ※ 총지급장학금 대비 유학생 장학금은 1% 내외에 불과함 ④ 장학금 지원을 위한 우수유학생 선별 시, 도내 유학생의 국적 비율 고려 예정이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계획 ⑤ 우수 유학생 선발은 '대학 선발·추천 → 도 심의·검증 → 최종선발'의 단계를 거쳐 엄격하게 이뤄질 예정(어학연수생 선발제외) ※ 대학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유학생에 한해 도 지원금 매칭이 고려되며, ①어학능력(TOPIK 등급), ②전공(도내기업의 인력수요와 일치하는 전공 우대), ③기타 제반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마. 종합 검토의견

○ (필요성) 이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 증가와 충청북도의 K-유학생 제도의 정착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타당성) 이 제정안은 학령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급감의 대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음

○ (법적합성) 상위 법령 위배 또는 부패영향평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집행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한 사업내용 조정, 자구 수정 등 집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다만, 조례안 심사 시 입법자의 제정 취지, 집행기관의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2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임

붙임1 입법예고시 제출된 반대의견

○ 박○○, 상당구, (전화번호 생략)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서 우수한 외국인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음.

▶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한다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는지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외국인 유학생 또는 어학연수생은 겸직금지를 한다든지 전혀 기준이 없음.

2.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호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제2호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제3호 생활·법률 상담
제4호 **취업·창업 연계** 및 상담

▶ **외국인 유학생 뿐만아니라 등에 어학연수생에게까지 포함됨**

- 이슬람권 무슬림인 외국인이 유학생으로 가장하거나 또는 손쉽게 어학연수생으로 등록하면 무조건 이 조례에 따라서 장학금 지원을 받고 지원 및 혜택을 받음으로서 국가재원이 낭비되는 조례임.

▶ **공산국가 외국인 유학생 뿐만아니라 어학연수생에게까지 지원**

- 공산권 국가인 중국, 베트남, 라오스, 쿠바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도 이 조례의 혜택을 받기만하고 조례지원 혜택자가 모국으로 귀국하면 국가재원만 낭비하는 것임.
- 조례상으로는 북한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도 장학금 지원과 생활, 법률 상담 지원을 해줘야하는 혜택임.
- 일정한 기준도 없이 외국인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이면 국적에 상관없이 장학금을 지원하고 주거지원을 하고 생활, 법률 상담과 취업, 창업 연계 및 상담은 너무 광범위한 외국인 지원으로 내국인 장학금과 취업, 창업 연계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함.

▶ **국내 학생에 대한 역차별**

- 국내대학 학생들도 취업난으로 학교에 상관없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하는데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에게 취업과 창업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국내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함.

4. 제6조(지원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대학,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대학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

- 지방대학의 경우 정원 충원을 위해서 실력이 미달되는 외국인 유학생을 무조건 유치함

으로써 조례 취지를 악용하여 국가의 예산이 낭비될 여지가 있음.

5. 결론

이번에 제정하려는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정한 조건도 없이 무조건 외국인 유학생 또는 심지어 어학연수생에게도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원 및 취업·창업 연계까지 해주어야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조례혜택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어서 국가재원이 낭비될 여지가 큼.

이뿐만 아니라 이슬람을 퍼트리기 위한 무슬림 위장 유학생, 위장 어학연수생도 조건 없이 혜택을 받게하는 조례임. 한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 유학하거나 단순히 형식적으로 어학연수생으로 등록하고 한국에서 불법취업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이면 아무런 조건 없이 조례 혜택을 받게 조례가 만들어졌으며 이는 국내학생들을 역차별하는 조례이므로 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함.

○ 진○○, 청원구, (전화번호 생략)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제안이유 반대- 지방대학,인구감소등의 문제점을 유학생을 통한 문제해결방식의 접근은 오히려 자국민에게 돌아가야할 혜택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가버릴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를 위해 존재하는 충북도의회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유학생활을 지원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이라는 기준과 그것을 판단할 주체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지않은 불완전한 조례이며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어떠한 유익을 주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실건지요? 이들을 지원해줌으로 충북도에 어떠한 유익이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위의 조례를 발의하셨는지 타당성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며 오히려 충북청년들을 힘빠지게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 주요내용 반대 -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지원사업 유치확대는 예산안 낭비라는 생각만 듭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오히려 충북 국내학생들 지원에 더 힘써주십시요! 대학을 나와도 청년들 직장잡기 힘듭니다! 충북도 학생들을 위해 써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6조에 지원사업에 대한 반대 - 대한민국에 온 유학생은 본인의 목적이 있어서 온것인데 그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및 장학금을 충북도가 지원해줘야합니까? 이건 외국 유학생에 대한 특혜입니다! 반대합니다.

제7조 유치확대에 대한 반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위한 각 대학별 유학생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설명회등은 각 대학에서 해야할일이고 진행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않습니까? 대학의 역할을 충북도예산으로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유학생들이 어떤 사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충북도 학생들과 경쟁하며 대학생활을 하는건데 한쪽만을 위한 지원확대정책이 맞습니까? 그러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종교관에 입각해 명예살인을 저지르는 종교를 가진 유학생들도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받을텐데, 자유민주주 대한민국

인 충청북도의 예산이 그런곳에 쓰여진다면 그건 반인륜적이고 반헌법적인 정책이 아닙니까? 유치확대가 지역경쟁력을 높이는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난민들이 선호하는 1위국가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에 대해 문턱이 낮고 많은혜택을 누릴수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바꿔말하면 대한민국의 자국민이 누려야할 혜택들의 초점이 빗나간 부분들이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난민정책을 통해 국가 소멸위기에 있는 프랑스를 보더라도 이슬람권의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프랑스의 법령이 미치지않은 그들만의 이슬람법으로 다스리는 지역들이 늘어가는 상황속에 무슬림에 의한 테러와 성폭행,폭력적인 범죄, 마약등의 범죄들이 증가해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다문화정책에 관해 <이슬람과 유럽문명의 종말 책>본문 129페이지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도 다문화는 실패했다고 공언하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10년 "다문화 사회를 건설해 공존하자는 접근법은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선언하였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2011년 2월 10일 '프랑스식 이슬람'이 아닌 '프랑스 안에서의 이슬람'은 반대한다고 선포하였다.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011년2월5일 독일 뮌헨의 국제 안보회의 연설에서 "무슬림 테러리즘 뒤에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존재한다]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문화 사회에 대해 실패를 선언하고 있는데 충청북도가 다문화정책의 확대판인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까지 유럽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으로 본인이 원하는 학업을 위해 온 외국인들을 위해 충북도가 나서서 혜택을 주는건 타당하지않을뿐더러, 충북도가 오히려 충북의 도민들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과 충북도의 출산율을 높일 가임여성들에게 쏟아야할 재정적,제도적 자원들을 엉뚱한 곳에 소진하는 결과를 불러올수 있습니다.
오히려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깊은 고찰과 본질적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존중가치관 확대를 위한 정책에 더 힘을 기울여주시면 어떨지요.
전년대비 1.7% 7580명 출생,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가 증가한 충북!
소망이 있는 충북입니다!
충북도민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추워지는 날씨지만 모두 건강하십시요!

2024.11.26. 충북도민 진수남 올림

붙임2 | 반대의견에 관한 집행기관 의견

CHUNGBUK THE CENTER OF KOREA 중심에 서다

2024.11.27.(수) 외국인정책추진단장 오세화(☎2690)
K-유학생추진팀장 김태범(☎2711), 정승호(☎2712)

「충북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 반대의견 대응

□ 주요 반대의견

① 충북도의회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 유학생활을 지원할 이유가 없으며, 충북도에 이익이 없음.

② 국내 청년도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갖기 어려우므로, 외국인 유학생보다는 도내 청년을 지원할 필요

③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취·창업 상담 등은 국내학생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

④ 유학생의 사상과 가치관(공산주의, 이슬람 등 특정 종교관)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반헌법적

⑤ 우수 유학생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대학이 정원 충원을 위해 학생을 선별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받는 등 조례 악용 우려

□ 대응자료

① 충북연구원 정책연구 결과 충북의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에 따른 교육서비스 생산유발효과(등록금으로 인한 효과)는 864.4억원**

-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시까지 **생활하면서 지출하는 비용,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를 통해 공급하는 인력**을 고려하면 유발효과 大

<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단위 : 억원, 명)

파급효과 대상 금액	전국			충북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2,122.8	3,628.9	1,912.7	2,704.5	2,655.1	1,511.8	2,079.0
				73.2%	79.0%	76.9%

- 법무부가 유학생 사증발급 시 요구하는 보증금액은 **학부생 기준 1년에 1,600만원**으로 **등록금과 체류비를 고려하여 산정**

⇒ 장학금 일부 지원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우수 유학생을 충북도로 이끄는 것**은 **우수유학생이라는 인력**과 그들이 **입국 시에 대한민국에 보증하는 외화**를 **동시에 유치하는 것**임.

② 현재 충북도 내 기업·산업계는 **만성적 구인난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도내 청년들은 제조업·뿌리산업 등 취업을 꺼리는 상황**

- **전국 평균보다 높은 청년 고용률***과 **빈일자리율 전국 1위****라는 기록을 동시에 갖고 있는 바,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가 심각**

* 통계청 고용동향('24.7.10.)　　**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24.1분기)

- 도내 기업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시 **청년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다는 의견 다수** 제출

※ 선미농산, 현대엘리베이터, 코스모신소재, 쓰리에이 등

- 한편, 다수 기업은 **외국전문인력 활용을 희망**(67.4%)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기업의 만족도**(75.6%)와 **추가채용 의향**(87.2%)도 높게 나타남.　　※ 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24)

⇒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로 **지역산업 인력공급에 외국인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유학생 시기부터 학업·체류를 지원**하여 **양질의 외국인력이 지역산업에 투입·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

③ 도내 **대학의 내국인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통한 학비 지원**,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창업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데 반해, **유학생들은 관련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

- 국내 학생들이 지불하는 **등록금은 14년동안 교육부 규제로 동결**되어 있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매년 인상하여 대학 재정 충원**

※ 경향신문('23.1.13.) "올해도 대학원·유학생 등록금 인상에 '한숨'"

- 대학이 유학생에게 지급하는 **총지급장학금 대비 유학생 장학금은 1% 내외에 불과**

※ 기준년도 : 2023년

학교명	내국인 장학금	유학생 장학금	총 장학금	유학생 장학금 비율 (%)
교통대	22,781,091,887	30,777,500	22,811,869,387	0.13%
청주교대	1,907,226,786	0	1,907,226,786	0%
교원대	5,830,771,850	0	5,830,771,850	0%
충북대	36,865,460,535	232,855,620	37,098,316,155	0.63%
꽃동네대	2,228,978,811	0	2,228,978,811	0%
청주대	39,301,640,069	550,245,360	39,851,885,429	1.38%
중원대	17,211,626,408	128,613,530	17,340,239,938	0.74%
극동대	10,288,414,991	584,919,070	10,873,334,061	5.38%
건국대 글로컬	26,790,960,480	284,055,204	27,075,015,684	1.05%
유원대	15,030,735,035	234,895,440	15,265,630,475	1.54%
서원대	26,285,441,535	331,098,800	26,616,540,335	1.24%
세명대	27,564,312,334	456,140,900	28,020,453,234	1.63%
총계	**232,086,660,721**	**2,833,601,424**	**234,920,262,145**	**1.21%**

④ 장학금 지원을 위한 **우수유학생 선별** 시, **도내 유학생의 국적 비율 고려 예정**이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계획

- **헌재 판례에 따르면 외국인도 기본권을 보장**받는 위치에 있으며(99헌마494),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음.**

⑤ 우수 유학생 선발은 대학의 **선발·추천 → 도 심의·검증 → 최종 선발**의 단계를 거쳐 엄격하게 이뤄질 예정(어학연수생 선발제외)

대학 선발·추천	→	도 심의·검증	→	최종선발 및 지급
• 대학별 장학생 선발체계 활용, 도에 **장학생 추천** ***어학연수생 제외**		• 제반서류 구비정도, 최종학력, GPA(학점), 어학능력, 전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검증된 학생에 한해 **도-대학 장학금 3:7~4:6 비율로 매칭하여 지급**

- **대학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유학생에 한해서 도 지원금 매칭**이 고려되며, ①**어학능력**(TOPIK 등급), ②**전공**(도내기업의 인력수요와 일치하는 전공 우대), ③**기타 제반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